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2. 16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1. 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1. 31.

다. 상정일자: 제260회 임시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2. 1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주차관리과장 양선주】

가. 제안이유

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근거 조문 마련 및 전통시장 주변
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
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문 신설 관련 「주차장법 시
행규칙」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
동차의 범위에 “관광버스” 추가 (안 제5조)
- 2)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문 신설(안 제5조의5)
- 3)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명확화로 주차요금
산정에 따른 혼선 방지(안 별표 1 제15호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근거 조문 마련 및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가. 주요내용

- 안 제5조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문 신설 관련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“관광버스” 추가하는 내용임.
- 안 제5조의5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안 별표 1 제15호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명확화로 주차요금 산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는 내용임.

나. 검토의견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버스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버스 도심 속 불법주차방지, 세외수입 증가의 효과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주차장법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버스 주차구획선 확정시 주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여 버스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